

2024년 제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

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저탄소작업장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「2024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」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

2024년 7월 26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·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※ 확인사항 ※

□ 공고문 반드시 확인

- **마이데이터 연동 불가**, 공고문 내 **제출서류** 참고 모두 제출
* 상황에 따라 서류 미(오)제출 시 보완요청 할 수 있음

□ 유의사항

- **소상공인24(www.sbiz24.kr)** **대표자 본인 명의**로 회원가입
* 대표자 본인신청이 원칙, 제3자(공급업체) 부당 개입(대리신청) 등 적발 시 참여배제
- 동 사업 또는 당해연도 유사사업(지자체 등) 수혜자의 경우 **중복지원 불가**

□ 지원품목

- 모든 지원항목은 소공인 작업장 환경에 따라 적합성에 부합해야 함
 - 안전환경조성 항목은 반드시 **작업장 안전과 연관성**이 있어야 함
 - * **중대재해 항목 (상시근로자 수 확인가능 서류 必 제출)** 5인 이상 확인가능 해야 함
 - * (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)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('23년 1월~ 12월)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
-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·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
- **지원품목 예시**
 - ① 청소기 - 부적합(작업환경의 안전성 개선효과 불인정)
 - ② (이동식)에어컨 - 부적합(안전 연계 부적합 및 에너지 관련 지원불가)
 - ③ 공구함 - 부적합(안전모, 안전대, 안전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50만원 미만 지원)
- * 지원 가능여부가 불분명한 제품/장비의 경우, 유선문의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목적 :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

나. 지원규모 : 400개사 내외

다. 사업기간 :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

라. 지원방식 : 사업비 매칭지원(국비 70% 이내, 자부담 30% 이상)

마. 지원내용 : 중대재해, 일반 중 1개 선택항목 지원

*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·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

** 중대재해 지원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만 가능(신청 미달 시 지원규모 조정)

지원항목		지원내용		지원한도	
				국비(70%)	자부담(30%)
안전환경 조성	중대재해	- (필수)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·컨설팅 -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·개보수, 안전장비 지원 ※ 대상 :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 *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必 서류 제출	300개사 내외	700만원 이하	300만원 이하
	일반	(필수)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·컨설팅 -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·개보수, 안전장비 지원	100개사 내외	420만원 이하	180만원 이하
소 계			400개사 내외	-	-

*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(50만원 미만)

** (상시근로자 수 산정)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('23년 1월~ 12월)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

2. 신청대상 및 자격

가. 신청대상 : 소공인(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)

*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(업종코드 : C10~C34) [붙임1] 참고

* 단,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

나. 자격요건

- 신청 마감일 기준 ('24.8.16.)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

구 분	내 용
휴·폐업 및 부도	· 신청일 현재 「기업의 부도, 휴·폐업」 중인 경우
세금 체납	·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참여 제한	· 정부사업에 참여제한(부정수급 등) 중인 경우
중복 제한	·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(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 수혜소공인 포함)

3. 신청방법

가. 신청기간 : '24. 7. 26.(금) ~ '24. 8. 16.(금) 18:00

나. 신청방법 : 온라인(소상공인24, www.sbiz24.kr)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
구분	단계	신청절차
사업 조회	① 회원가입 및 업체정보등록	○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 접속, 대표자 본인 명의로 ☒회원가입 후 신청 * 기존 소상공인 마당 회원인 경우 주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면 신규회원가입 必 ○ 신청할 신규(기존)업체 등록 진행
	② 사업찾기	○ 홈페이지 화면에서 [지원사업신청 -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] → 지원신청 버튼 클릭
신청 준비	③ 정보수집동의	○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다음단계 진행
	④ 마이데이터동의	○ 마이데이터동의 유무 관계없이 선택 후 다음진행
	⑤ 자가진단	○ 자가진단 확인 사항 체크 후 다음단계 클릭
신청서 작성	⑥ 신청서 작성·제출	○ 업체정보,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, 매출액, 상시근로자수 작성 ○ 회사 소개 및 사업추진계획 작성 ○ 작업장 주소(또는 설치희망장소) 및 현황 작성 ○ 제출서류 모두 첨부(가점서류 포함(해당자)) * 마이데이터 연동 불가하므로 모든 서류 필수 제출 ○ 중대재해 항목 신청시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 필수제출 *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아래 제출서류 참고 ○ 작업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현장사진 첨부 → 신청완료 * 수정이 필요 할 경우, ☒임시저장 버튼 클릭,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

□ 조건에 맞는 항목을 선택·제출

1) 소상공인확인서 **발급받은 자**

제출서류		발급처
소공인 매출액 · 업종 확인 서류	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(업태 : 제조업 必) *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	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(국번없이 126) (www.hometax.go.kr)
	☐ 국세 납세증명서+지방세 납세증명서 √ 확인사항 : 유효기간 내 신청 마감일 포함 (법인의 경우 기업, 대표자)	
	4개 서류 중 택1	
	①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必)	
	② 「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+ 반드시 둘 다 제출 ↳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	
가점서류	③ 「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+ 반드시 둘 다 제출 ↳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http://sminfo.smba.go.kr) (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)
	④ 최근 창업하여 매출액·업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, [붙임4]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	
☐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*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* 소상공인 명시 必		
☐ 각 항목별 가점서류 ▶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, 공고문 내 가점항목 참고		
중대재해만 해당		
☐ 상시근로자 수 서류 택1 ▶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건강보험 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내역),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,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		

2) 소상공인확인서 **미발급 자**

가) 상시근로자가 **없는** 경우

제출서류		발급처
소공인 매출액 · 업종 확인 서류	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(업태 : 제조업 必) *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	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(국번없이 126) (www.hometax.go.kr)
	☐ 국세 납세증명서+지방세 납세증명서 √ 확인사항 : 유효기간 내 신청 마감일 포함 (법인의 경우 기업, 대표자)	
	4개 서류 중 택1	
	①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必)	
	② 「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+ 반드시 둘 다 제출 ↳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	
가점서류	③ 「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+ 반드시 둘 다 제출 ↳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	국민건강보험공단 (www.nhis.or.kr) (1577-1000)
	④ 최근 창업하여 매출액·업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, [붙임4]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	
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* 단,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		
☐ 각 항목별 가점서류 ▶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, 공고문 내 가점항목 참고		

나)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

제출서류		발급처
소공인 매출액 · 업종 확인 서류	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(업태 : 제조업 必) *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	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(국번없이 126) (www.hometax.go.kr)
	☐ 국세 납세증명서+지방세 납세증명서 √ 확인사항 : 유효기간 내 신청 마감일 포함 (법인의 경우 기업, 대표자)	
	4개 서류 중 택1 ①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必) ② 「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+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」 반드시 둘 다 제출 ③ 「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+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」 반드시 둘 다 제출 ④ 최근 창업하여 매출액·업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, [붙임4]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	
	☐ 아래 4개 서류 중 택1 ①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- (국세청) ② 건강보험 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내역) 1 ③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(건강보험공단) ④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 J	
	☐ 각 항목별 가점서류 ▶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, 공고문 내 가점항목 참고	
가점서류		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(국번없이 126) 국민건강보험공단 (www.nhis.or.kr) (1577-1000)

4. 평가절차 및 지원절차

가. 평가절차: 요건검토 → 서면평가 → 사전진단(교육포함)

- (요건검토) 소공인* 여부, 필수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·검토
 * 상시근로자 10인 미만,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(업종코드 : C10~C34)
- (서면평가) 작업장 환경에 따른 희망 지원항목의 필요·적절성 평가
 및 안전사고 예방·탄소중립 지원 효과성
 * 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작성시 작업장 환경과 희망 지원품목의 필요성을 상세히 작성

<산업안전 서면평가지표>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기본 심사 (70점)	· 안전환경 개선의 필요성	20
	· 안전환경 개선의 시급성	20
	· 업종별 산업재해율	20
	· 근로자 수에 따른 산업재해율	10
품목 심사 (30점)	·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	15
	· 기대효과	15
가점 (5점)	· 집적지구소공인, 풍수해보험가입자, 재기지원 패스트트랙, 안전사고 유경험업체,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업체, 백년소공인, 일회용품대체품 제조소공인	5

<탄소중립 서면평가지표>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기본 심사 (70점)	· 에너지절감의 필요성	20
	· 에너지절감의 시급성	20
	· 업종별 산업재해율	20
	· 근로자 수에 따른 산업재해율	10
품목 심사 (30점)	·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	15
	· 기대효과	15
가점 (5점)	· 집적지구소공인, 풍수해보험가입자, 재기지원 패스트트랙, 안전사고 유경험업체,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업체, 백년소공인, 일회용품대체품 제조소공인	5

* 2020년 국가통계포털 KOSIS재해현황(업종별, 규모별 요양재해율) 참조

- (교육이수)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사업수행방법, 지원품목, 유의사항 등 안내 및 중대재해처벌법, 탄소중립 관련 인식교육
 - (사전진단) 현장점검을 통해 작업장 위험성, 작업효율 등을 평가하여 필요 항목·지원금액 등 결정*
- * 사전진단 시,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

나. 지원절차

- (사업수행) 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고, 사전진단을 통해 확정된 지원분야·지원항목과 일치하도록 수행

<공급업체 선정 기준>

구 분	세부기준
공통	○ 지원항목과 관련이 있는 업태와 종목을 운영하는 업 ○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 ○ 상시근로자 1인 이상(사업주 포함 2명) 업체 ○ 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), 비속(자제),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의 공급업체는 선정 불가
공사·개보수	○ 관련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-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(전문)건설업 등록증 -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-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

- (지원금 정산) 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로 선금(자부담금 및 환급가능한 부가세 포함)을 지급하고, 수행 완료 후 공단에게 지원금 지급 요청
- * 전문기관에서 정산서류(세부 기준은 [붙임3] 참고) 작성 지원 예정
- (사후관리) 사업수행 및 정산 완료 후, 전문기관을 통해 품목 검수, 지원 후 성과, 현장 만족도 등 지속 관리 예정

5. 가점

구분	가점항목(점수)	가점기준	제출서류
1	집적지구 소공인(2)	○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내에서 지정된 업종으로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 - 세부 업종 및 지역은 [붙임2] 참고	• 소진공 확인 (제출서류 없음)
2	풍수해보험 가입자(1)	○ 행정안전부가 권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'풍수해보험' 가입 소공인 * 풍수해보험 보험기간이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 인정	• 풍수해보험 보험증권 (소상공인 보험)
3	안전사고 有경험 업체(2)	○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 사실이 있어,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재해승인을 받은 업체	• 산업재해요양승인반려 여부확인서 (정부24, 근로복지공단)
4	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업체(2)	○ 최근 3년 이내, 근로자의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한 업체	• 급여명세서 상 "건강검진비" 명시 필수
5	재기지원 패스트트랙(1)	○ 채무조정자 패스트트랙 연계 지원자	• 소진공 확인 (제출서류 없음)
6	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소공인(2)	○ 환경부에서 배포한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 리스트에 포함된 소공인	• 소진공 확인 (제출서류 없음)
7	백년소공인(3)	○ 중기부에서 선정한 백년소공인	• 소진공 확인 (제출서류 없음)

* 신청마감일 기준('24.8.16.)으로 해당여부 검토

** 가점한도는 최대 5점이며, 증빙자료(제출자료) 미제출 시 불인정

6. 추진절차(안)

공고 중기부, 소진공 '24. 7.	▶	신청·접수 소진공, 소공인 ~'24. 7~8.	▶	요건검토 소진공 ~'24. 8.	▶	서면평가 전문기관 ~'24. 9.	▶
사전진단 전문기관 ~'24. 9.	▶	사업수행 신청인, 공급업체 ~'24. 9~10.	▶	정산·집행 소진공, 회계법인 ~'24. 11. 30.	▶	사후관리 소진공, 전문기관 지속	

7. 접수 · 문의처

구 분	담 당 자	문 의
사업문의	중소기업통합콜센터	☎ 1357
	한국표준협회	☎ 02-6240-4862, 4861(안전)
신청·접수 시스템	소상공인24 시스템오류문의	☎ 1644-5302

8. 유의사항

- 신청·접수는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에서만 가능합니다.
- 본 사업 신청 시 **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**이며, 제3자(공급업체, 브로커, 직원 등) 부당 개입(대리신청, 기타 수수료 요구 등) 적발 시 공단 사업 참여에서 배제됨은 물론이며, 관련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또한, 소공인은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을 경우 즉시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서의 경우 신청기간 동안 임시저장상태 신청서는 작성·보완 가능하며, **신청완료(제출) 이후 수정 불가**합니다.
- 사업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미비나 누락, 신청 시 기재착오 등의 경우, 이로 인한 불이익(신청취소 또는 신청탈락)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소공인에게 있습니다. 단, 상황에 따라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여부 판단은 공단에 있습니다.
- 신청서, 현장사진,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,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소공인은 공급업체 선정 시, 소공인의 대표와 특수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, 공정거래법 부당 공동행위 위반(담합)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급업체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합니다.
- 사업신청소공인은 서면평가 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**교육을 필수로 이수**하여야 하며 현장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.
- 소공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,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, 사업수행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**10일 이내**로 전문기관을 통해 지급요청과 함께 완료확인서 등 정산 서류 제출로 원활한 비용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.
-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본 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, 당해 연도 내 지자체· 타 기관 유사사업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**신청이 불가**합니다.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신청취소,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.
- 단, 기존 지원이력이 있으나,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 지원 가능(단, 사업장소재지·설치 희망 장소가 동일할 경우 지원 불가)

붙임 1
지원업종(중분류)

대분류	분류코드	중분류	매출액 기준	상시근로자
제조업	C10	식료품 제조업	120억원 이하	10인 미만
	C11	음료 제조업		
	C14	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	
	C15	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	
	C19	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	
	C20	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		
	C21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	
	C23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	
	C24	1차 금속 제조업		
	C25	금속 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		
	C26	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	
	C28	전기장비 제조업		
	C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	
	C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	
	C32	가구 제조업		
	C12	담배 제조업	80억원 이하	
	C13	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 제외		
	C16	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 가구 제외		
	C17	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	
	C18	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	
	C22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	
	C27	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		
	C31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	
	C33	기타 제품 제조업		
	C34	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10억원 이하	

붙임 2

소공인 집적지구 지역 및 업종현황

구분	지역	범위	업종코드
1	서울특별시	○ 금천구 독산동	• C14 (의복, 의복액세서리, 모피제품 제조업)
2		○ 성북구 보문동, 월곡동, 장위동, 종암동, 석관동	• C14 (의복, 의복액세서리, 모피제품 제조업)
3		○ 영등포구 문래동	• C24 (1차 금속 제조업) • C25 (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) • C29 (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)
4		○ 종로구 봉익동, 묘동, 원남동	• C33 (기타 제품 제조업)
5		○ 종로구 종로1·2·3·4·5·6가동, 창신제1·2동, 송인제1·2동	• C14 (의복, 의복액세서리, 모피제품 제조업)
6		○ 성동구 성수동	• C15 (가죽, 가방 및 신발제조업)
7		○ 중랑구 면목동, 상봉동	• C13 (섬유제품 제조업, 단 의복 제조업 제외) • C14 (의복, 의복액세서리, 모피제품 제조업) • C15 (가죽, 가방 및 신발제조업)
8		○ 마포구 서교동	• C18 (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)
9		○ 도봉구 창동	• C14 (의복, 의복액세서리, 모피제품 제조업)
10		○ 관악구 신사동, 조원동, 미성동	• C14 (의복, 의복액세서리, 모피제품 제조업)
11		○ 양천구 신월동	• C15 (가죽, 가방 및 신발제조업)
12		○ 광진구 중곡동	• C13 (섬유제품 제조업, 단 의복 제조업 제외) • C14 (의복, 의복액세서리, 모피제품 제조업)
13		○ 동대문구 용신동	• C14 (의복, 의복액세서리, 모피제품 제조업)
14	경기도	○ 군포시 군포1동	• C25 (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)
15		○ 포천시 가산면	• C32 (가구 제조업)
16		○ 양주시 남면	• C13 (섬유제품 제조업, 단 의복 제조업 제외)
17		○ 시흥시 대야동, 신천동	• C25 (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) • C29 (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)
18		○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	• C26 (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, 통신장비 제조업)
19		○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	• C10 (식료품 제조업)
20		○ 화성시 향남읍, 팔탄면, 정남면	• C29 (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)
21		○ 화성시 봉담읍	• C25 (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)
22		○ 화성시 동탄5동	• C26 (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, 통신장비 제조업) • C29 (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)
23		○ 안양시 관양동	• C26 (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, 통신장비 제조업)
24		○ 여주시 오학동, 북내면, 대신면	• C23 (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)
25		○ 광주시 초월읍, 오포읍, 광남동	• C32 (가구 제조업)
26		○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, 월곶면	• C29 (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)
27		○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	• C18 (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)
28	인천광역시	○ 동구 송현동, 송림동	• C25 (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) • C28 (전기장비 제조업) • C29 (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)
29		○ 서구 오류왕길동	• C25 (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)

구분	지역	범위	업종코드
30	강원도	○ 강릉시 사천면	• C10 (식료품 제조업)
31		○ 강릉시 주문진읍	• C10 (식료품 제조업)
32		○ 인제군 북면	• C10 (식료품 제조업)
33		○ 원주시 우산동	• C29 (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)
34	충청북도	○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	• C18 (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)
35	대전광역시	○ 대덕구 오정동	• C25 (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) • C29 (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)
36	충청남도	○ 공주시 유구읍	• C13 (섬유제품 제조업, 단 의복 제조업 제외)
37		○ 금산군 금산읍	• C10, C11 (식료품, 음료 제조업)
38		○ 홍성군 광천읍	• C10 (식료품 제조업)
39	전라북도	○ 순창군 순창읍	• C10 (식료품 제조업)
40		○ 전주시 팔복동	• C25 (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)
41		○ 부안군 진서면	• C10 식료품 제조업)
42	광주광역시	○ 동구 서남동	• C18 (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)
43		○ 동구 충장로 4가, 5가	• C33 (기타 제품 제조업)
44	대구광역시	○ 중구 대봉1동	• C14 (의복, 의복액세서리, 모피제품 제조업)
45		○ 중구 성내동	• C33 (기타 제품 제조업)
46		○ 북구 노원동	• C27 (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)
47	경상북도	○ 영주시 풍기읍	• C10 (식료품 제조업)
48	부산광역시	○ 동구 범일동	• C14 (의복, 의복액세서리, 모피제품 제조업)
49		○ 금정구 서동	• C14 (의복, 의복액세서리, 모피제품 제조업)
50	경상남도	○ 김해시 진례면	• C23 (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)
51		○ 하동군 화개면	• C10 (식료품 제조업)

※ 집적지구 내 소공인은 해당 **지역범위**와 **업종코드**가 일치하여야 함

붙임 3

지원금 정산서류 기준

※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(소공인 →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할 때에는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

정산서류	정산서류 인정기준
전자세금계산서	-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승인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 ※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
본건적서 또는 거래명세서	- 구체적인 위탁 내용(품목, 수량, 단가 등)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,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※ 최저가견적을 제시하는 공급업체를 선정
비교견적서	견적 내용(품목, 수량, 단가 등)이 기재되어 공급업체 본건적서의 위탁 내용과 비교가능한 타공급업체의 견적서
사업자등록증	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
공급업체의 통장사본	- 공급업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통장 -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명(또는 공급업체명)으로 개설된 통장 ※ 가상계좌, 평생계좌는 인정 불가 (단, 평생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통장의 경우에도 일반 계좌번호로 기재할 경우 인정)
이체확인증	- 다음의 5가지 사항이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로 자부담액과 부가가치세 입금 내역이 확인되어야함. ① 송금인명 ② 송금시각 ③ 입금 받는 자(공급업체)의 예금주명 ④ 입금 받는 자(공급업체)의 은행명 ⑤ 입금 받는 자(공급업체)의 계좌번호 ※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, 신용카드(직불카드) 결제거래는 불인정
폐기완료확약서	- 폐기완료확약서 및 폐기물처리영수증 제출 ※ 교체가 아닌 개·보수 건의 경우 해당 서류 불필요
완료확인서	신청인(소공인)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

(해당 시)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양식

※ 다음과 같이 주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.

최근창업한 1년 미만자로서 당기(직전회계연도)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포함)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(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포함), 면세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증빙자료 구비가 불가한 경우, 주업종확인서류를 작성하여 제출

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

업체명 (상호)	대표자명	사 업 자 등록번호
사업자등록증(명) 상 업태(업종) (예 : 제조업+도소매업)		
주업종명(업종코드)* (예 : 식료품 제조업(C10))		

* **[붙임1]** 소공인 업종 및 기준을 확인하여 부합하는 업종명과 코드기재

위와 같이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,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, 관련 국고보조금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합니다.

2024 년 월 일

업 체 명 :

대 표 자 : _____ (인, 서명)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